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1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 오영환·김남국·우원식

민형배 · 최혜영 · 이정문

전용기 · 이재정 · 박 정

박홍근 • 이수진 • 진성준

서영석 · 이탄희 · 김철민

임호선 · 박성준 · 장경태

서영교・홍정민・강득구

김민석 · 김민철 · 문정복

김영배 · 한병도 · 양기대

이형석 · 소병철 · 박재호

오기형 · 오영훈 · 박완주

이소영 · 이은주 · 이용우

이해식 의원(37인)

제안이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평균 325명의사망자와 1,8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 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전 관계 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조사의 목적·항목 및 결과를 전산시스 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 16조).
- 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라.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 소방 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 조).
-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게 소방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 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사.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36조).
- 아. 공항·철도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42조).
-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4조).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현

장조사 · 문서열람 ·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화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요인을 파악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가 소방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이에 필요 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 · 홍보
 -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공공기관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현황
 -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 대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 제6조(화재의 예방·안전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자 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 기 필요한 경우
 -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만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목적과 조사항목 등을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 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 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두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 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 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 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 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 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 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 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제3항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현황
- 2. 법령 위반 내용
- 3.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관련 정보
- ② 제1항의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예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전기 및 가스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사전협의 후 안전조

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1.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관리를 맡은 자는 그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 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시장지역
 - 2.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7.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

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 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비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 등의 보수·보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 등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화재안전영향평가 등

-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령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 또는 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화재 위험성 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 실무추진단) 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재안전영향평가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소방청장은 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화재의 예방 등을 위한 조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물 중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 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2. 소방시설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 3. 화재위험요인의 제거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후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긴급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킬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게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한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 약자"라 한다)의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 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소방청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 현황
 - ② 정부는「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시·도지사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시·도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6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 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 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5조제3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자격·인 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제37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5. 제38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7.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일지의 작성(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 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제29조(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 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 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 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 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 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1조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4. 제35조에 따른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①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 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 임신고 현황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 임사실의 확인 현황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의 시험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증의 정지·취소 처분 현황

- 5.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보조자
 - 2.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하려는 자
- 제36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관리의 권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

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제1항의 권원을 가진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협의하여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 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 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과 거 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 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 ·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의 내용·절차·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8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 3. 자위소방대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장 화재예방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41조(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조치 등) ① 소방 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화재예방 특별 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전원의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 5.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 6.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7. 그 밖에 화재예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②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교육 · 훈련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 4. 화재예방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운영
 -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관리규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 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제38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2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44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 · 보급

-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 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선임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

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47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취소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 제48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 부렁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
-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 임신고의 접수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사실의 확인
 - 3.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
 -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5.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6.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교육

-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인자는 제외한다.
 -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
 -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 4. 제42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에 종사하는 진단기관 의 임원 및 직원
 - 5.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 원 및 직원

제9장 벌 칙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아니한 자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 한 설비의 설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및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 및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

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 니한 자

-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5.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6.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자
 -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조치 이행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 입구에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된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4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보며,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 제5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

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동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동 소방 안전관리자는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3호·제4 호·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 안전조사
-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